

의안번호	2215494
의 퇴 인	한준호의원
회 답 일	2026. 3. 26.
추계번호	25B71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함.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지원지방도²⁾는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도로를 말함
 -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 현행법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의 보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의 보조 현황: 2023~2025년

	2023		2024		2025	
	노선 수	총 보조액	노선 수	총 보조액	노선 수	총 보조액
건설	66개노선 (488.8km)	2,781억원	65개노선 (492.6km)	3,274억원	59개노선 (464.6km)	2,651억원
보수	-	-	-	-	-	-
유지·관리	-	-	-	-	-	-

주: 1) 건설에 대한 국가의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³⁾에 따라 공사비의 70%를 보조

2) 도로의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 보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국토교통부

- 1)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70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 개정안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가 보조의 범위에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제외한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조 사례가 없으며, 현 시점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 국가의 보조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법 및 시행령⁴⁾은 도로에 대한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 외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조 사례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국가지원지방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유료도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및 통행료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및 통행료 수입 현황(2023~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일산대교	308	314	318
거가대교	764	791	799
미시령터널	65	67	74

자료: 국토교통부

- 4) 법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채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